

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

제 출 자 : 목포시장

1. 제정사유

-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목포시장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규정(안 제4조)
 - 장애인 상담지도, 의료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, 심리재활, 재가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
 - 기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- 이용대상(안 제5조)
 -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,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함.
- 이용료(안 제6조)
 -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.
 - 이용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
- 위탁운영(안 제7조)
 - 복지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.
 -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의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
 - 장애인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%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는 할 수 있도록 함
 -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
- 수탁자의 의무(안 제8조)
 -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며, 수탁자는 보

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

-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
- 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을 신·증축 및 내부시설 개조·변경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
-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다른 안전 및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
- 수탁자의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 준수 등

3. 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계법령 :

- 장애인복지법

5. 예산사항 : 2003년 예산소요사업에 456백만원(국비 182, 도비 274)

6. 입법예고 : 2002. 9. 9 ~ 9. 30(22간)

7. 검토의견

- 목포시 상동 803-3번지(하당동사무소 뒷)에 건립중인 「목포장애인복지관」이 2003. 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.
- 특히 「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」 건립사업비 2,431백만원은 국비 500백만원, LG복지재단에서 1,931백만원 출연으로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인 바,
-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8. 참고자료

-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현황 1부.
- 장애인복지법 1부.

□ 목포 장애인종합복지관

- 위 치 : 목포시 상동 803-3
- 규 모 : 대지 458평, 건물 532평(지하 1층, 지상2층)
- 사 업 비 : 2,431백만원(국비 500, LG복지재단 1,931)
- 공시기간 : 2002. 4 ~ 2003. 2

○ 종 사 원 : 22명

○ 주요시설

- 지하1층 : 기계실, 전기실

- 지상1층 : 보호작업실, 직업훈련실, 자원봉사실, 사무실, 프로그램실

- 지상2층 : 작업치료실, 체력단련실, 물리치료실, 언어치료실,
놀이치료실, 심리치료실

○ 현 공 정 : 65%(내부 미장 및 외부 적벽돌 공사중)

※ 2003년도 예산 456백만원